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16. 김대식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 11.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대식의원)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은 ①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대학·대학원 등의 ② 채용후보자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있음.

① 개정안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기술환경과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이미 사내대학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음.

② 또한 개정안은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의 입학자격에 채용후보자

를 포함하여, 채용후보자는 사내대학원뿐만 아니라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얻게 되는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입학자격을 종업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로 확대하고 있고, 채용후보자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을 선제적으로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백승아 의원,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